

<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>

구분	사업	코드	내용	정책자금
고유 번호증	개인 및 단체	-	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.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	(비영리) 신청불가
		사업자등 등록증 (①②③ - ④⑤ - ⑥⑦⑧⑨⑩)	개인	01~79
80	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 (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)			(비영리) 신청불가
89	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			(비영리) 신청불가
90~99	개인면세사업자			(영리) 신청가능
법인	81,86, 87,88		영리법인의 본점	(영리) 신청가능
	82		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(법인격이 없는 사단, 재단,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)	(비영리) 신청불가
	83		국가, 지자체, 지자체 조합	(비영리) 신청불가
	84		외국법인의 본·지점 및 연락사무소	(영리) 신청불가
	85		영리법인의 지점	(영리) 신청불가

* 비영리법인이 '사회적기업' 인증을 받은 경우, 대출신청 가능

【 영리 기준 】

- ① 영리 개인사업자
 - 일반사업자 :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
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: 정책적으로 보호,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
- ② 영리법인 :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
 - '상법'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·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
 - '중소기업기본법'(제2조제4항)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'중소기업협동조합법'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(소상공인)로 할 수 있다.
 - 영농조합법인 : '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' 제28조 및 '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'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6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.

【 비영리 기준 】

*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·법인·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

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
-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영유아플라자 등
-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(요양원, 방문요양서비스, 주·야간보호서비스 등)은 비영리사업에 해당
- '민법'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
 - ※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.
 - ☞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·재단법인
 - ☞ 「사립학교법」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학술·종교·자선·기예·사교·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(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으로 하고 주주·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.
 -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* 비영리법인이 '예비사회적기업'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☞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- ☞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- ☞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② 교회 등 종교단체

- '민법'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,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

③ 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 등)